

독이 든 열매를 약으로 쓰는 법



양재규
기획팀 팀장, 변호사

미드(미국드라마) 폐인들 사이에서 명작으로 통하는 <더 와이어>는 미국 내에서도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볼티모어의 마약반 경찰들을 다룬다. 제목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경찰들은 마약범을 잡기 위해 상시 도청을 한다. 적법절차? 안중에도 없다. 일단 도청부터 하고 본다. 드라마 속 경찰들은 꽤 실력 있어 보이지만 도청이 아니면 마약수사는 어렵도 없어 보인다.

도청은 세상 어디에서나 행해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도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볼티모어 마약반 경찰들처럼 일단 하고 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다음 사례에 비춰볼 때 크게 다를 것도 없는 듯하다.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분주한 곳은 정치권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4월과 9월, 그리고 10월 당시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은 서울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나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5년 여름, 이 은밀한 대화가 세상에 공개된다. 1997년 당시의 대화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도청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흔히 ‘안기부 X파일’이라 부르는 사건이다.

‘안기부 X파일’을 세상에 알린 것은 언론과 한 정치인이었다. 특히, 정치인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치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는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잡는다’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삼성의 승리’ 내지는 ‘검찰의 승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불온한 대화를 나눈 삼성이나 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에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쪽은 처벌받았다. 결과적으로 강자는 무사했으나 약자는 다쳤다. 이런 대결구도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이번 사건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썩 정의롭지 못한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진 후 세간의 관심은 온통 삼성과 검찰에만 쏠렸다. 삼성이 돈으로 정계와 검찰을 관리하는지, ‘떡값 검사’는 정말 돈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대다수 논의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사건의 진실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도청사실이라고 본다. 도청이 아니었다면 영영 알려지지 않았을 불온한 모의가 불법적인 도청 덕분에 공개되어 공공의 이익이 달성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법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미 2011년 3월 17일 유사한 사안(2006도8839)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은 … 그 대화의 주요 내용을 비실명 요약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녹음 사실 및 제재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당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 수단이 나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하였다”(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도청과 더불어 그로 인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의 공개 또한 처벌하고 있다. 취지는 불법도청을 원천봉쇄하고자 함이다. 불법도청이라는 독나무 외에도 거기에 달린 열매까지 금지시키지 않으면 독의 확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나무라도 때로는 쓸 만한 열매가 달릴 수 있다. 독을 제거하거나 독성을 약화시키기만 하면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가만 살펴보면, 불법도청이라는 독나무에 약이 될 만한 열매가 달린 형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으로 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대법원은 비실명 요약보도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왜 MBC가 비실명 요약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명 및 대화 내용의 상세한 공개로까지 나아갔는지 지적하고 있다.

만일 MBC가 ‘안기부 X파일’ 사건 보도 당시 도청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비실명 요약 보도 형식으로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안기부 X파일’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은 병든 세상을 고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을 쓰는 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또 비슷한 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찌거나, 말리거나, 달이는 등 가공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